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<u>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</u>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## 서울북부지방검찰청

공보담당 부장검사 임유경

전화 02-3399-4904 / 팩스 02-3399-4909

보도자료 2025. 1. 23.(목)

제목

### 부가가치세 자료상 조직을 범죄집단 혐의로 엄단 - 총책 등 10명 적발, 총 9명 기소(3명 구속) -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 (제11조 제1항)
- ☑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- 조세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(부장검사 안광현)는
   조직적으로 53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, 세금 20억 원 상당을
   포탈한 대형 조선사의 하도급 업자와 배후 조직원 등 총 10명을 적발하여
   핵심 조직원 3명을 구속 기소 6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(1명 기소중지).
- 수사검사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업체의 명의상 대표자를 수사하던 중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범행임을 파악하고, 전국 검찰청에 산재한 관련 사건들을 전부 이송받아 끈질기게 수사하여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고, '부가가치세 자료상 범죄집단'으로 의율하여 엄단하였음
- 또한, 차명 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혐의도 철저히 수사하여 기소하고,
  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추징보전 등 조치하였음
- 본건 수사를 통해, 전국 단위에서 조직적으로 암약하며 지능적인 방법으로 국민의 혈세를 좀먹고 국가재정을 약탈하면서도, 명의상 대표자를 내세워
   처벌을 회피하려는 조세사범들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.
- 앞으로도 서울북부지검은 조세중점청으로서 과세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
   조직화·전문화하는 조세범죄에 엄정 대응하겠습니다.

1

# 피고인 및 주요 공소사실

연 번	피고인	역할	공소사실	처분
1	<b>A</b> (남, 27세)	자금관리책	- 선박임가공업체 운영자로서 '21. 11.~'23. 12.경 총책(기소 중지), B 등과 부가가치세 자료상 범죄집단 조직ㆍ활동 - 하도급업체(18개)로부터 용역 공급받아 수요처(21개)에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531억 원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, 20억 원 부가가치세 등 포탈 - 총책 J에게 범죄수익 1억 5,900만 원, B에게 범죄수익 1억 7,300만 원을 송금하여 은닉 [범죄단체조직, 범죄단체활동, 특가법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, 특가법위반(조세),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]	구속 기소 ( <sup>°</sup> 24. 12. 12.)
2	<b>B</b> (남, 40세)	사업자 관리 및 연락책	- '21. 11.~'23. 12.경 부가가치세 자료상 범죄집단 조직·활동 - 공급가액 425억 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- A로부터 범죄수익 1억 7,300만 원을 수수하여 은닉 [범죄단체조직, 범죄단체활동, 특가법위반(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),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]	구속 기소 ('24. 12. 26.)
3	<b>C</b> (남, 38세)	임시 총괄관리책	- '23. 10.~'23. 12.경 부가가치세 자료상 <b>범죄집단 가입·활동</b> - <b>공급가액 114억 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</b> [범죄단체가입/활동, 특가법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]	구속 기소 ('24. 12. 26.)
4	<b>D</b> (남, 38세)	서류작성책	- '23. 8.~'23. 12.경 부가가치세 자료상 <b>범죄집단 가입·활동</b> - <b>공급가액 246억 9,100만 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</b> [범죄단체가입/활동, 특가법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]	불구속 기소 ('25. 1. 22.)
5	<b>E</b> (남, 53세)	명의상 대표자 모집책	- '23. 3.~'23. 12.경 부가가치세 자료상 <b>범죄집단 가입·활동</b> - <b>공급가액 158억 1,100만 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</b> [범죄단체가입/활동, 특가법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]	불구속 기소 ('25. 1. 22.)
6	<b>F</b> (남, 37세)	명의상 대표자	- '23. 7.~'23. 11.경 부가가치세 자료상 <b>범죄집단 가입·활동</b> - <b>공급가액 62억 5,900만 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</b> [범죄단체가입/활동, 특가법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]	불구속 기소 ('25. 1. 22.)
7	<b>G</b> (남, 40세)	명의상 대표자	- '23. 7.~'23. 12.경 부가가치세 자료상 <b>범죄집단 가입·활동</b> - <b>공급가액 47억 5,700만 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</b> [범죄단체가입/활동, 특가법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]	불구속 기소 ('25. 1. 22.)
8	<b>H</b> (남, 58세)	명의상 대표자	- '23. 7.~'23. 12.경 부가가치세 자료상 <b>범죄집단 가입·활동</b> - <b>공급가액 63억 9,300만 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</b> [범죄단체가입/활동, 특가법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]	불구속 기소 ('25. 1. 22.)
9	<b>I</b> (남, 49세)	명의상 대표자	- '23. 7.~'23. 12.경 부가가치세 자료상 <b>범죄집단 가입·활동</b> - <b>공급가액 67억 6,500만 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</b> [범죄단체가입/활동, 특가법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]	불구속 기소 ('25. 1. 22.)

#### [부가가치세 자료상 범죄집단 조직도]



# Ⅱ 주요 수사경과

- '24. 3. 26. 서울중랑서, 명의상 대표자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송치
- '24. 8.~11. 전국 검찰청에서 관련 사건 **7**건 이송받아 병합 수사
- ②4.11.√25.1. 휴대전화 13대·컴퓨터 7대 디지털 포렌식분석,
   40여개 사업자계좌 자금추적 등 조사
- '24. 11. 27. A 구속(12. 12. 구속 기소)
- '24. 12. 13. **B, C 각 구속**(12. 26. 각 구속 기소)
- '25. 1. 22. 나머지 **6명 불구속 기소**

# Ⅲ 수사결과 및 의의

- 대표적 국가재정 약탈 범행인 조세사범을 범죄집단으로 엄단
  - 부가가치세 자료상 등 조세사범은 조직적으로 유령 사업자등록, 계좌 및 계약서 허위 작출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**과세·수사 당국 감시망을 피해** 국민의 혈세를 좀먹고 국가재정을 약탈하여 왔음

- 거래 증빙이라는 세금계산서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세금 탈루를 조장하는 중대한 국가재정 범죄를 자행하였음에도, 명의상 대표자를 내세워 범행의 전모가 규명되지 않은 채 가볍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었는바, 철저한 수사를 통해 형법상 범죄집단으로 엄단함으로써 경종을 울림

#### ● 전문 수사역량 활용하여 사안 실체를 신속히 파악

- 서울북부지검의 조세전문 수사인력(조세 블루벨트 검사, 회계·자금추적 수사관 다수 배치), 대검찰청의 자금추적 수사관, 디지털 포렌식분석 요원 등 전문적인 수사역량을 적극 활용하고, 국세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허위 하도급업체를 이용한 거래구조 및 조직의 실체를 밝힘
- 휴대전화 13대·컴퓨터 7대 디지털 포렌식분석, 40여개 사업자계좌 자금추적 등 방대한 증거분석이 필요한 사안에서, 전문성을 통해 신속 하게 사건을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하였음

#### ● 53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집단 실체 규명

- 명의상 대표자 1명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을 송치받아 단건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, 관련 사건 7건을 모두 이송받아 병합 수사함으로써 53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, 20억 원 상당 조세를 포탈한 조직적 범행임을 파악하였음
- 이를 통해 대형 조선사의 하도급 업자와 그 배후의 부가가치세 자료상 조직원 등 **총 10명을 적발**하여 국세청에 고발의뢰하는 등 협력하고, **범죄** 집단조직·가입·활동죄로 추가 인지하여 핵심 조직원 3명(자금관리책, 사업자 관리·연락책, 임시 총괄관리책)을 구속 기소하고, 6명을 불구속 기소 하였음(1명 기소중지)

- 또한, 범죄수익을 나누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로 범죄수익을 취득하거나 처분을 가장한 혐의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인지하여 기소함과 동시에, 재산을 추정보전하는 등 범죄수익환수 조치를 실시하여, 범죄집단을 구성 및 유지하는 근본적인 유인책인 범죄수익을 박탈하였음

## Ⅳ 향후 계획

● 앞으로도 서울북부지검은 조세범죄 중점 검찰청으로서 전문 수사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, 과세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조직화·전문화하는 조세범죄 및 국가재정 약탈 사범에 엄정 대응할 예정임 ⅢⅢ